

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‘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’를 폐지하고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

한 각종 사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금융 수행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과 고용보조금 지원 특례규정 삭제,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른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보조금 심의 실무 위원회 규정 삭제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행사 개최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